

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 재증

독촉 내용

독촉장

귀하는 다음 채무자의 로서 오른쪽 독촉장에 적힌 금액을 독촉 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에 따라 오른쪽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
제 2차 납부 의무자	상호(성명)	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사업장(주소)			
주된 납부자	상호(성명)	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사업장(주소)			
1.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2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				
2.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				
3. 이 독촉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(☎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납부번호	세무서 코드	연 월	소득구분	발행번호
상호(성명)		계좌번호		
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귀속 연월	교육부 소관	취업 후 학자금 상환
사업장(주소)				

독촉납부기한	년 월 일 까지
의무상환액	
연체금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제30조제1항	
연체가산금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제30조제2항	
계	
년 월 일까지 금액	
년 월 일까지 금액	

위 금액을 위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세무서장 (인)

❖ 납부 방법(납부가능시간: : ~ :)

-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를 통한 전자납부
- 온라인 계좌이체, CD/ATM 계좌이체
-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무통장 입금(계좌이체)

※ 다만, 은행창구를 통한 계좌이체는 금융기관별 영업시간 내에 납부 가능함

❖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창구 납부는 무통장 입금형식(계좌이체)으로만 가능하며,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❖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 건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